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

2016년 9월 23일 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5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체육회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종목단체가 규약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가입신청서류)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의 정관(규약) 및 제 규정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6. 읍·면·동지부 및 읍·면·동 종목단체 설치 현황
7.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8.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9.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10.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11.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및 참가실적
12. 당해 단체의 국제경기연맹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중앙경기단체에 관한 참고자료
13.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제 4 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세종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세종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조직 되어 있을 것
 5. 해당종목은 읍·면·동종목단체가 3분의 1 이상 조직되어 있을 것
 6. 제5호의 읍·면·동 종목단체는 1개팀 이상의 등록팀 또는 동호인조직(클럽)을 보유할 것 다만, 경기종목에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8.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9.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10.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은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읍·면·동종목단체가 4분의 1이상 조직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 5 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세종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세종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조직 되어 있을 것
5. 해당종목은 읍·면·동종목단체가 4분의 1 이상 조직되어 있을 것
6. 제5호의 읍·면·동 종목단체는 1개팀 이상의 등록팀 또는 동호인조직(클럽)을 보유할 것 다만, 경기종목에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8.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9.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10.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은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읍·면·동종목단체가 5분의 1이상 조직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 6 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세종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세종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조직 되어 있을 것
5. 해당종목은 읍·면·동종목단체가 5분의 1 이상 조직되어 있을 것
6. 제5호의 읍·면·동 종목단체는 1개팀 이상의 등록팀 또는 동호인조직(클럽)을 보유할 것 다만, 경기종목에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8.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9.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10.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 7 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체육회 규약 제10조에 따른다.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심의 요청 또한 같다.

제8조(결격단체 지정)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하여 해당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결격단체로 지정하되,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에 의거 제명한다.

- ② 결격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체육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는다.
- ③ 체육회는 등급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종목단체가 체육회 규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체육회규약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인 경우
5. 체육회 규약 제9조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지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③ 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탈퇴신청) 회원단체가 체육회 규약 제10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부 칙 <2016. 9. 23.>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 조(경과조치) ① (구)세종시체육회 종목별경기단체와 (구)세종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 대상인 경우 해당 종목단체가 통합하였을 때 회원종목단체가 된다. 다만, 중앙종목단체 회장선거 이전에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

8조 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되며, 통합을 하여 정관(규약)변경 승인 신청을 한 날부터 회원종목단체로 본다.

② 비통합 대상단체는 중앙종목단체 회장선거 이전에 회장선출 및 신규집행부를 구성하여 정관(규약)을 승인 받아야 회원종목단체로 인정 할 수 있으며, 기간내 정관(규약)을 승인 받지 못한 경우는 등록단체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단체가 된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이 가능한 단체로 본다.

④ 제4조 제5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구)세종시체육회 종목별경기단체와 (구)세종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 2단체 중 상위 등급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고 비통합대상종목의 경우는 (구)세종시체육회 및 (구)세종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등급을 승계한다. 단, 승계 종목단체 중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등록단체, 결격단체, 미등록 종목단체는 인정단체로 하며, 대한체육회 등급심의 후 회원자격 변경 시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는 기존 등록된 등급을 승계한다.

⑤ 부칙 제2조에 따른 본회 회원단체의 등급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본회는 2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에 따라 본회 회원단체의 등급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등급 심의가 있기까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종목단체의 등급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⑥ 제8조는 최초의 등급심의부터 적용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별지 제2호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연 락 처	자택전화 :		
직 장	직장명 :			직장전화 :		
	소재지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경 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별 관 계(일자)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미 필 사유
		. . ~ . .				
배우 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부 모	父		子		
	자 녀	母		子		
<p>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작 성 자 성명			년 월 일		인(서명 또는 날인)	

